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2010년 상반기,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포상금제 시행

- 지난 21일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법률안에 따르면, 뺑소니 차량을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검거하게 될 경우 최고 1백만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 - 정부에서는 뺑소니 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책임보험 수준의 손해배상보장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으나, 정부가 지급하는 보상비는 매년 약 250억원에 달하고 있음.
- 현재 뺑소니 차량 운전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가중처벌을 하고 있으나, '08년 한 해 동안 12,684건의 뺑소니 사고 중 약 19%인 2,420건이 검거되지 않음.
 - 뺑소니 교통사고는 범죄행위로서 부상자가 사고현장에 방치되는 경우 사망 또는 중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, 가해자 측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인적·물적 피해를 배상받을 수 없어 피해자의 고통이 더욱 가중됨.
- 따라서 뺑소니 사고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되면 뺑소니 사고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감시와 신고로 뺑소니 사고 검거율이 높아짐으로써 억울한 교통사고 피해자를 구제하고 나아가 뺑소니 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.
 - 본 법안은 뺑소니 차량을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뺑소니 차량을 검거하게 될 경우 최고 100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.
-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포상금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이후 국무회의 및 국회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쯤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며, 포상금 지급대상, 기준,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될 것임.

(뺑소니 사고차량 신고 시 100만원의 포상금 지급, 국토해양부 자동차손해배상보험, 4/20)